

『외화서비스 하나 통장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7. 1. 23

2. 개정내용: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p> <p>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<u>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 (50%)</u>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② 이 예금에서 <u>외화현찰로 출금 시 현찰수수료 (50%)</u>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	<p>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p> <p>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<u>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(전신료는 제외)를 최고 30%까지</u> 감면 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	<p>송금수수료 감면율 변경</p> <p>외화현찰수수료 감면 삭제</p>
<p>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</p> <p>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 통장(타인명의계좌 제외)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<u>환율 (50%)</u>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	<p>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</p> <p>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(타인명의계좌 제외)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<u>주요통화(USD, EUR, JPY)는 최고 40%, 기타통화는 최고 20%까지 환율(Spread) 우대서비스를</u> 제공합니다. (기타통화 : GBP, CAD, CHF, HKD, SGD, AUD, NZD, THB, NOK, SEK, DKK)</p>	<p>우대율 변경, 통화별 우대율 구분 표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